#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 목 차

1. 위험성평가 개요 ····· 1

2.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1

3. 회사개요 ····· 2

4.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 3

5. 안전·보건관리 예산 및 시설현황 ····· 4

6. 안전·보건관리 활동 실적 ····· 4

7. 안전·보건관리활동 계획 수립 ····· 5

8. 위험성 평가 대비 작업 공정 ····· 11

9. 작업형태별 유해위험 요인 ····· 13

10 위험성 평가 실시공고 ····· 17

11. 위험성 평가 연간계획서 ····· 18

12. 위험성 평가 ····· 19

<서식1> 위험성 평가표

<서식2> 유해·위험요인 파악조사표

<서식3>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서식4>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서식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서식6> 위험성평가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7> 위험성평가 회의결과 보고서

<별첨1> 산업재해조사표 ····· 42

<별첨2>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 45

# 1 위험성 평가 개요

##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 주도 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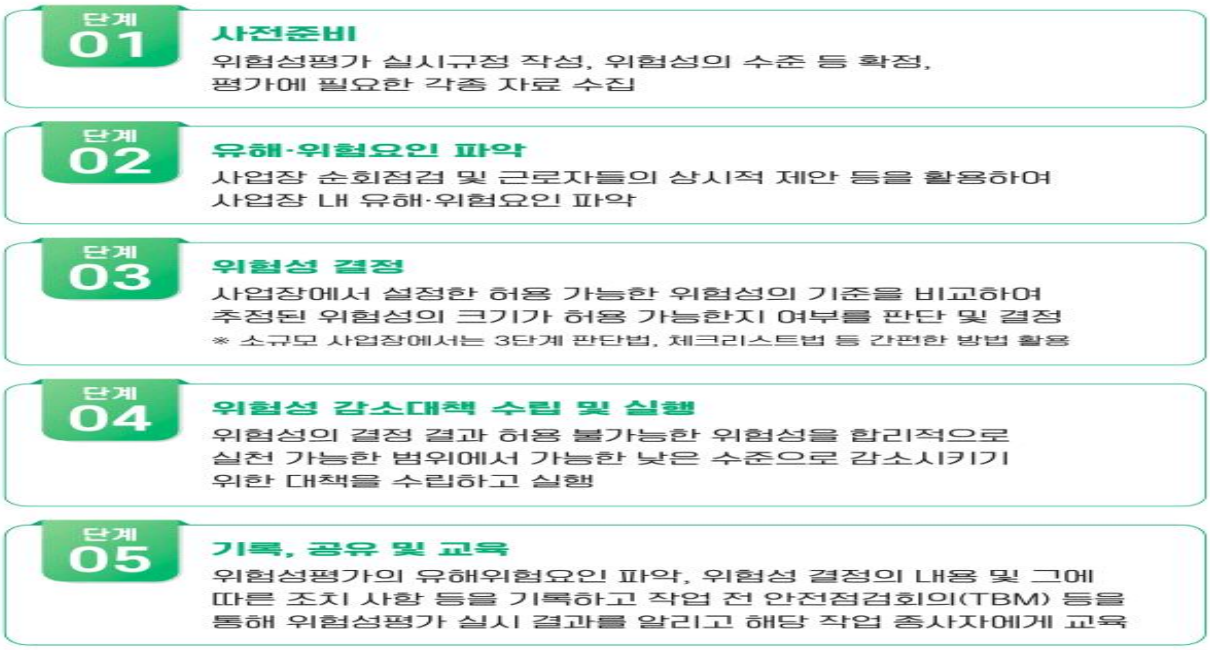
## 1. 목적

○ 유해·위험요인과 서비스 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설비와 업무수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 작업장 내·외의 모든 서비스 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종사자로 한다.

### 3. 안전·보건 계획 수립·이행 절차




### 4. 안전·보건 경영방침

○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자와 이용인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한다.**

○ **위험을 예측하며, 안전보건 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안전보건 목표를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 **근로자와 이요인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계획을 세운다.**

## 3 회사 개요

### 1. 회사개요

○ **업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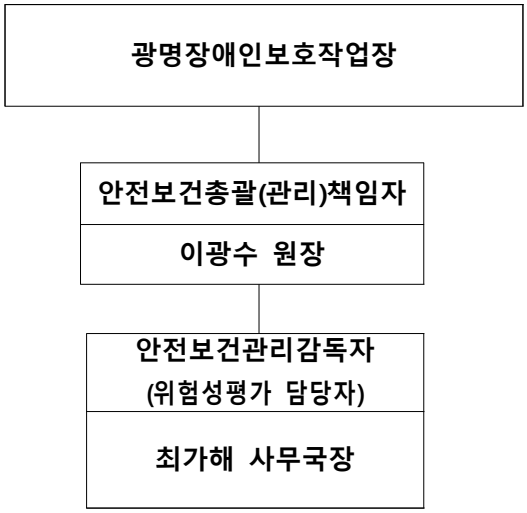
○ **업종특성**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은 광명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성인장애인들의 직업진단, 상담, 직업훈련 등의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지는 시설입니다.

○ **종사자 : 14명**

## 4 안전 · 보건관리 조직 구성

# 위험성평가 조직도




### 2. 책임과 권한

○ 안전보건책임자 : 원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사무국장

| 직제 분류 | 성명 | 직책 | 역할 | 권한 |
|---|---|---|---|---|
|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자 | 이광수 | 원장 | -안전보건 방침, 목표, 책임과 권한 승인<br>-안전보건 계획의 실행 및 운영 확인<br>-안전보건 규정 및 지침서, 매뉴얼에 대한 승인<br>-안전보건활동 자원 제공 검토 및 승인<br>-안전보건 교육, 점검, 경영시스템 계획 수립 및 운영 | 승인<br>확인 |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 최가해 | 사무국장 | -안전보건 계획의 실행 및 운영<br>-안전보건 경영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br>-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성과측정<br>-사고접수,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br>-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br>-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및 공유<br>-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현안사항 공유 및 회의진행 | 계획수립<br>운영수립<br>&<br>점검운영<br>확인공유 |

## 5 안전 · 보건관리 예산 및 시설현황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예산(원) | 세부내역 |
|---|---|---|---|---|
| 1 | 안전 설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 시설설비 | 800,000 | 200,000원*4회 |
| 2 | 안전장구 구입비용 | 응급약품 | 200,000 | 10,000원*20개 |
| 3 | 안전보건 교육훈련 | 안전보건교육 | 200,000 | 100,000원x2회 |
| 4 | 안전보건 관련장비 및 기타 | 노후안전용품 교체 | 900,000 | 100,000원*5회 |
| | | 시설점검 보완 | | 100,000원*4회 |
| 5 | 안전보건표지 비용 | 안전보건표지 | 50,000 | 1,000원*50개 |

## 6 안전 · 보건관리 활동실적

### ○ 연간 안전사고 현황실적

(단위 : 건)

| 구분 | 2023 | 2024 | 2025 | 비고 |
|---|---|---|---|---|
| 계 | | 0 | | |
| 1월 | - | 0 | | |
| 2월 | - | 0 | | |
| 3월 | - | 0 | | |
| 4월 | - | 0 | | |
| 5월 | - | 0 | | |
| 6월 | - | 0 | | |
| 7월 | 0 | 0 | | |
| 8월 | 0 | 0 | | |
| 9월 | 0 | 0 | | |
| 10월 | 0 | 0 | | |
| 11월 | 0 | | | |
| 12월 | 0 | | | |

### ○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실적

(단위 : 건)

| 구분(사업팀) | 2023 | | 2024 | | 2025 | | 비고 |
|---|---|---|---|---|---|---|---|
|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
| 계 | 0 | 0 | 0 | 0 | | | |
| 보호작업장 | 0 | 0 | 0 | 0 | | | |

### ○ 안전보건 교육계획

| 구분 | 교육명 | 교육내용 | 교육일자 | 대상자 |
|---|---|---|---|---|
| 1 | 사회복지시설<br>안전관리교육 | 안전대비 교육 | 2024.07월 | 안전보건책임자<br>안전보건관리감독자 |
| 2 |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종사자교육 | 분기별 1회 | 종사자 전원 |

### ○ 안전보건 점검 계획

| 구분 | 점검명 | 점검내용 | 점검대상 | 점검일자 | 점검자 |
|---|---|---|---|---|---|
| 1 | 안전보건 현장점검 | 안전보건 점검 | 종사자 | 2024.05.28. | 안전보건관리감독자<br>사업담당자 |

### ○ 근로자 건강검진 및 작업 활동 측정 사항

| 구분 | 항목 | 점검자 | 점검대상 | 점검내용 | 기간 |
|---|---|---|---|---|---|
| 1 | 안전보건 현장점검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종사자 | 정기 건강검진 | 연중 |

## 7 안전 · 보건활동 계획 수립

### ○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주기적 점검을 통한 위험 예방 및 미비사항 개선)

| 구분 | | 점검주기 | 규정 | 비고 |
|---|---|---|---|---|
| 1 | 사업전반 | 월1회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br>시행규칙 등 준수사항 확인 | |
| 2 | 유해 위험요인 확인<br>개선절차 마련 | 반기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준수<br>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br>절차마련 | |
| 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br>등의 평가기준 마련<br>및 평가관리 | 반기1회 이상 | 사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br>시행규칙 준수 사항확인 | |

| 구분 | | 점검주기 | 규정 | 비고 |
|---|---|---|---|---|
| 4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점검 | 반기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br>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 노사위원회 |
| 5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반기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 |

## ○ 사업장 안전 담당자 순회 점검

| 구분 | | 점검주기 | 내용 | 비고 |
|---|---|---|---|---|
| 1 | 사업장 안전담당자 순회점검 | 반기1회 이상 | 안전 작업 준수 및 구성원의 안전의식 등 확인(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예방) | |

## ○ 외부업체 선정 및 지원

| 구분 | | 점검주기 | 내용 | 비고 |
|---|---|---|---|---|
| 1 | 외주업체 안전관리 점검 사항 | 한성,엘베,삼산 (업체별 상이) | -전기,소방,가스,방역등 외부업체 선정<br>-안전 작업 준수 및 평가<br>-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충족 및 의사소통<br>-사고 발생 빈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

## ○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다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교육 제외.

## ○ 비상사태 대비 및 초기대응

-비상사태 대응체계: 사업 운영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사고 가능성을 파악하고, 체계 구축과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여 발생 시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며, 안전보건책임자는 재해 대응 총괄 지휘 (비상사태별 계획에 의한 임무가 부여된 종사자는 자신의 임무수행)

-안전보건책임자는 관련기관에 재해 발생 보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인원 동원 협조요청(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119등 긴급상황 연락과 함께 재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실시(단, 추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직접적인 구호 조치는 생략 가능함)

## ○ 긴급대피

-화재 확산 등 초기대응 불가 시, 안전보건책임자는 시설에서 정하는 비상대피장소로 종사자 및 이용인을 긴급 대피 조치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비상대피장소 현황>

| 장애인복지타운 외부 주차장 | 장애인체육관 옥상 | 광명서초등학교운동장 |
|---|---|---|
|  |  |  |

## ○ 신고[보고] 및 현장보존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후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을 서면보고(서류제출기한: 산업재해조사표(발생일로부터 1개월), 중대재해발생보고서(즉시)

-작업 중지 조치된 현장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전 원칙

## ○ 사고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책임자는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복구계획이 포함된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작성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작성

| 대상 | | 권한 | 역할 | 비고 |
|---|---|---|---|---|
| 1 |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자** (이광수 원장) | 승인 / 지원 | -비상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br>-비상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승인<br>-비상경보 체계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 확인<br>-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
| 2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최가해 사무국장) | 수립 안전지원 /지도 | -사고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br>-중대재해 및 비상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br>-중대재해 및 비상사태 발생시 운영현황 지속적 확인 및 검토<br>-비상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승인<br>-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

## ○ 비상 상황 및 재해 발상시 업무절차




##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 기대효과 : 화재, 폭발사고, 질식 등 재해상황에 따라 사업장내 구성원이 참여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해 경각심 부각 및 신속한 대응조치와 구성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자 함.

| 구분 | | | 비고 |
|---|---|---|---|
| 1 | 훈련시간 | - 1시간 | |
| 2 | 훈련빈도 | - 연1회 | |
| 3 | 훈련주체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4 | 훈련방법 | - 화재, 폭발, 질식 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통한 훈련<br>- 비상사태 대응훈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br>- 이론 교육 및 실습(영상교육 포함) | |
| 5 | 훈련과정 | - 관내 소방서 등 관공서 연계<br>- 단계별 역할 분장(업무분장 숙지)<br>- 합동훈련(필요시) | |

## ○ 비상사태 상황별 대처 및 응급후송 절차

| 구분 | 위급 또는 중한 외상 |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 이송시 |
|---|---|---|---|
| 상황 | ■ 기도폐쇄, 호흡곤란(1분에 30번 이하 시)<br>■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br>■ 의식이 없을 때<br>■ 개방골절인 경우,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br>■ 병원 이송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br>■ 이송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br>■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 ■ 경미한 부상<br>■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br>■ 고열, 단순외상 등 |
| 절차 | 이용자 참여 사업담당 | ■ 담당자→ 보호자연락 → 환자상태, 이송병원 안내 |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토록 안내(의료기관 선택 은 학부모 의견에 따름) |
| | 이송 | ■ 사업담당자가 함께 이송<br>■업무일지 또느 프로그램일지에 기록 | ■ 보호자에게 인계<br>■ 부모가 연락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사업담당자가 이송함을 원 칙으로 한다. |
| | 이송차량 | ■ 기관 차량, 119, 병원 응급차량<br>(※직원 차량인 경우 이송 시 이송 도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응급 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운전을 하지 않는다.) | |
| 치료비 | 차후 기관보험(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 | |
| 이송 경비 | ■ 환자 후송 시 동행직원(응급처치자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장 처리함. | | |
| 기타 | ■ 응급을 요하는 경우 119에 연락한 후 연계병원 또는 응급외상병원으로 이송한다.<br>■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기록은 후송 즉시 기록하도록 한다.<br>(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 내용 등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기록 | | |

## ○ 비상사태 대응 물품 및 사용용도

| 구분 | | 상황 | 물품명 | 사용용도 | 비고 |
|---|---|---|---|---|---|
| 1 | 화재 | - 화재진압 | - 소화기(ABC, K급, 투척용), 소화전 | - 화재 발생기 초기진압 | |
| | | - 화재예방 | -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 화재 발생요인 차단 | |
| 2 | 질식 | - 환기 | - 출입문, 창문 | - 환기를 통한 질식예방 | |
| | | - 질식 예방 | - 수건 | - 젖은 수건으로 질식예방 | |
| | | - 출입통제 | - 출입통제 안내문 | - 관계자외 출입통제<br>- E/V등 밀폐공간 진입차단 | |
| 3 | 추락 | - 낙상 | - 낙상(추락)안내문 | - 위험 안내 | |
| 4 | 감전 | - 전기 | - 감전위험 안내문 | - 위험 안내 | |
| 5 | 비상상황 | - 대응전기 | - 심장 제세동기 | -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 |
| | | | - 신호봉 | - 지시, 안내용 | |
| | | | - 구급상자 | - 응급환자 초기치료용 | |
| | | | - 비상연락망 | - 대응체계 유지 | |

## ○ 건강검진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실시 주기 : 채용 건강검진(채용전), 일반검진(1년 1회)
- 실시 방법 : 개인별 실시 이후 담당자(간호사)보고 확인 및 기록관리

## ○ 건강검진 종류 및 실시 대상

| 채용전 건강검진 | | 일반 검강검진 | | 수시 건강검진 |
|---|---|---|---|---|
| 대상 : 근로자 | ▶ | 대상 : 근로자 | ▶ | 건강장애 호소자 및 소견근로자 |
| 신규 채용시 | | 1년 1회 | | 수시(필요시) |

※사후관리 /유소견자 관리 : 채용 전/일반 건강검진으로 확인된 有소견자에 대해 재검사 및 특별관리 실시

## ○ 집단 감염별 예방조치

| 구분 | | 내용 | 비고 |
|---|---|---|---|
| 1 | 종사자 및 방문개 출입 전 발열체크 | -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출입통제 | 1층현관 |
| 2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자체방영 실시 | - 사업장 내 마스크 향시 착용 및 정부 방역방침 준수<br>- 자체 방역(직원 및 외부방역단) 실시<br>- 손 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 | 상시 |
| 3 | 신속항원 검사 및 PCR 선제검사 | - 주기적 선제검사를 통한 집단 감염 예방 및 초기대응 | 필요시 |
| 4 | 확산시 운영계획 | - 확진자 및 의심자 방문시 해당 사무실 폐쇄 및 방역<br>- 종사자 및 접촉자 PCR 검사 및 격리 조치(확진 종사자는 공가)<br>- 밀접접촉자 동선 조사 및 관련기관 협조<br>- 비상대책 수립 및 감염병 대응매뉴얼 준수 운영<br>- 밀접접촉자 재택근무 전화 | 운영메뉴얼적용 |

## 8 위험성 평가대비 작업공정

○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업무유형에 따라 8가지 작업공정으로 진행한다.

| 작업구분 | 생산품 생산업무 (제과제빵, 로스팅, 카페, 도자기) |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업무 | 물품배달 (배송, 택배) 지원 업무 | 사무행정업무 |
|---|---|---|---|---|
| 유해위험요인 | 전도, 중량물취급, 불안정한 작업자세 | 차량을 통한 외부행사지원, 집단프로그램지원등에서 올수 있는 전도, 불안정한 자세 | 넓은 지역 배달로 조급함과 주시태만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 지속적, 경직된 불안정 작업자세 |

**○ 위험성 평가대비 평가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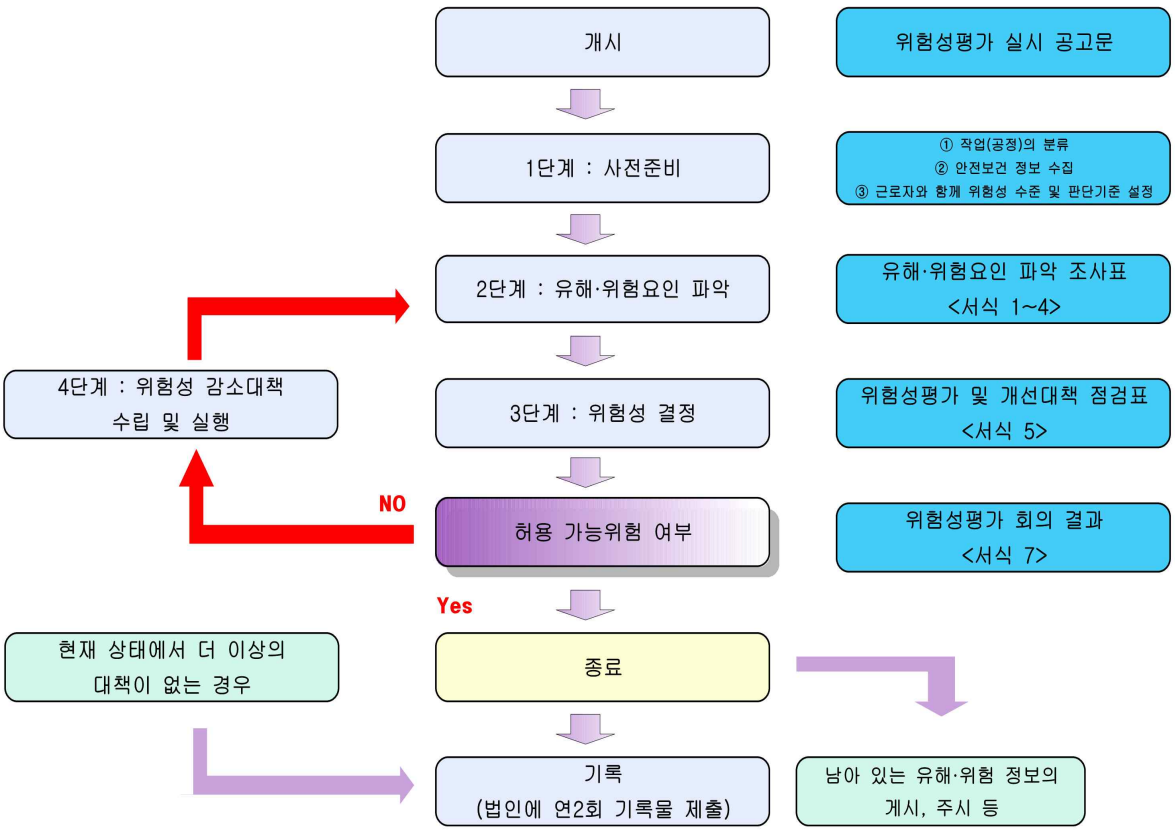
-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은 성인장애인들의 직업진단, 상담, 직업훈련 등의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직무 내용으로 구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는 시설장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장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종사자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교육을 이수한 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 평가 실시 이전에 상기 구성된 평가인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교육을 실시한다.

## ○ 위험성평가 절차

| | |
|---|---|
| 1단계 | 위험서평가 안내서 설명 (자체제작 교육자료 이용) |
| 2단계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지도 매뉴얼”설명(실시계획서 자료) |
| 3단계 | “예제를 통한 위험성 평가 연습” |
| 4단계 |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자체제작 교육자료 이용)<br>(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 5단계 |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 · 수정 설명(자체제작 교육자료 )<br>(안전보건공단 제공 위험성평가표) |
| 6단계 |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설명(자체제작 교육자료) |



## 9 작업형태별 유해위험 요인

○ 본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험요인은 성인장애인의 돌방행동에 대한 급작스러운 대처상황,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전도 및 근골격계 질환, 재활프로그램 및 사무업무, 차량운전 및 관리, 장시간 사무업무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되므로 위험성평가는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전작업이 부수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표 1] 작업형태별 유해위험 요인

| 작업 형태 | 유해위험 요인 |
|---|---|
| 장애인생산품 생산 업무(제과제빵) | ㅇ가스누출 경보기 오작동으로 가스폭발사고 위험<br>ㅇ중량물을 혼자 무리하게 취급함으로 인한 요통 발생<br>ㅇ가스기구 사용 시 사용 미숙으로 화재 위험 |
| 장애인생산품 생산 업무(카페) | ㅇ고온 스팀 및 온수에 의한 화상 위험<br>ㅇ카페 주방의 물기 등으로 인한 미끄럼 으로 골절 위험 |
| 장애인생산품 생산 업무(원두로스팅) | ㅇ가스누출 경보기 오작동으로 가스폭발 사고 위험<br>ㅇ원두 로스팅 장비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 |
| 장애인생산품 생산 업무(도자기) | ㅇ고전압 전기사용으로 인한 감전 위험<br>ㅇ도자기 생산 작업에 따른 기관지 관련 질환 위험<br>ㅇ도자 물감 사용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 |
|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업무 | ㅇ낯선 환경에 부적응으로 돌발 행동이 나타나 사고발생 위험<br>ㅇ프로그램 공간의 정리가 안되어 넘어지는 사고 발생 |
| 물품배달(택배) 지원 업무 | ㅇ좁은 골목길을 오가며 부딪쳐 타박상을 입거나 전도 위험<br>ㅇ무거운 물건 운반 중 무리한 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br>ㅇ물품을 차에 싣고 내릴 때 불완전한 자세에서 오는 요통발생 |
| 컴퓨터 등 사무 업무 | ㅇ컴퓨터 사용 등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작업 시 목 위팔 증후근 및 VDT(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영상표시 단말기 증후근) 발생<br>ㅇ당장 위험함을 느끼지 못함으로 유해자세 지속으로 질병 발생 |

○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예)>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 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점(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 구분 | 가능성 | 기준 |
|---|---|---|
| 상 | 3 | • 발생 가능성이 높음<br>•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
| 중 | 2 | • 발생 가능성이 있음<br>•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
| 하 | 1 | • 발생 가능성이 낮음<br>•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 구분 | 중대성 | 기준 |
|---|---|---|
| 대 | 3 |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br>• 입원치료를 요하는 사고<br>•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 중 | 2 | • 골절 등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br>•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 소 | 1 |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br>• 가벼운 통증 및 상처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 |

<표 4> 위험성 추정표

|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 대 (3) | 중 (2) | 소 (1) |
|---|---|---|---|
| 상 (3) | 높음 (9) | 높음 (6) | 보통 (3) |
| 중 (2) | 높음 (6) | 보통 (4) | 낮음 (2) |
| 하 (1) | 보통 (3) | 낮음 (2) | 낮음 (1) |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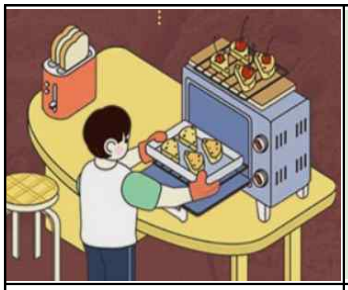
| 위험성 수준 | | 관리기준 | 비고 |
|---|---|---|---|
| 1~2 | 낮음 |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
| 3~4 | 보통 |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작업방법 및 작업인원 조절 등 작업효율성 검토 및 환경개선 실시 |
| 6~9 | 높음 |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험성평가 수행 예시**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작업장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 및 컴퓨터를 활용한 사무업무와 시설관리 등 구분하여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tr><td></td><td></td><td></td><td></td></tr>
<tr><td>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br>(제과제빵)</td><td>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br>(카페)</td><td>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br>(원두로스팅)</td><td>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br>(도자기)</td></tr>
<tr><td></td><td></td><td></td></tr>
<tr><td>사회복지<br>(프로그램지원)업무</td><td>물품배달(택배)<br>지원업무</td><td>사무행정 업무</td></tr>
</table>

[그림 1] 각 작업영역별 구분

위 7개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실시는 <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제과제빵)>, <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카페)>, <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원두로스팅)>, <장애인생산품생산업무(도자기)>,<사회복지(프로그램)지원업무>, <물품배달(택배)지원업무>, <사무행정업무>작업영역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내었고, **KRAS(위험성평가시스템)을 활용** 하여 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수록하였다.

## 10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공고

## 위험성평가 실시알림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시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 일 시 : 2024.11.14.(목) ~ 11.18.(월)
- 장 소 :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 참석대상자 :보호작업장 종사자 전원(시설장 외 13명)

○ 참고사항

-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평가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따라 담당공정의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시설명** :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 이광수 서명

# 위험성평가 연간계획서

| | 사무국장 | 원장 |
|---|---|---|
| 결재 | 최가해 | 서광수 |

시설명 :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작성일자 : 2024년 5월 2일

| 구분 | 세부내용 | | 성과지표 | 목표 | 추진일정 1/4 | 2/4 | 3/4 | 4/4 | 담당자(책임자) | 예산 |
|---|---|---|---|---|---|---|---|---|---|---|
| 1. 사전준비 (의사소통) | · 방침 및 추진 목표 공표 | | 건수 | 1건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 · 실시계획서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 | 회수 | 2회 | |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2. 위험성평가교육 | · 위험성평가 시설장 교육 | | 명 | 1명 | |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10만원 |
|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 명 | 1명 | | ⟷ | ⟷ | ⟷ | 관리감독자 | 10만원 |
| | · 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 | 명(%) | 14명(100%)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3. 위험성평가실시 | · 최초평가 | 연간계획서작성 | 회 | 1회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 | 위험성평가실시팀구성 | | | | ⟷ | | | | |
| | | 대상공정 및 분류 | | | | ⟷ | | | | |
| | | 위험성평가실시 | | | | ⟷ | | | | |
| | | 감소대책수립 | | | | ⟷ | | | | |
| | · 정기평가 | | 회 | 1회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 · 수시평가 | | 회 | 발생시 | ⟷ |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위험성평가

<서식 1>

## 위험성 평가(빈도·강도법)

| 평가대상:베이커리제품제조/원두로스팅/카페/도예공방/사회복지사업/택배배송/행정사무업무 | | | | 평가일시: 2024. 11. 18. | | | | | 평가자 : 최가해 | | | | |
|---|---|---|---|---|---|---|---|---|---|---|---|---|---|
| 공정명 | 세부 작업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관련근거 (법적기준)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현재위험성 | |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및결과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 | |
| 베이커리 제품 제조 | 원료 입고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주변의 방해물에 의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작업장정리정돈및청소<br>2.전도예방조치(전용신발제공)<br>3.바닥이물질제거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특성 요인 | 무거운 중량물작업에 의한 근골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 1.인력작업시과도한중량에 의한근골격계부담을주지않도록조치<br>2.원자제이동시대차사용 | 2 (중) | 1 (하) | 2 (낮음) | 자제 이동시 대차사용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 작업환경 요인 | 이동공간과 작업자 이동공간의 중첩에 따른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 1. 장애물 제거 | 1 (하) | 2 (중) | 2 (낮음) | 환경정리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혼합 | 기계적 요인 | 기계설비의 동력전달부에 작업자가 말리거나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의 방호조치가 되어있는가?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1. 안전덮개 등 설치 | 1 (하) | 2 (중) | 2 (낮음) | 안전덮개설치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 | 작업장 주변은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작업장 정리정돈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 전기적 요인 | 혼합기 등 기계설비의 구동모터 누전 발생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분에 접지를 실시하였는가?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1. 누전에 감전예방을 위해 해당 부분(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외피/철대, 충전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 전기 미사용 설비 일부) 접지 | 1 (하) | 3 (대) | 3 (보통) | | 3 (보통) | | | |

| | | | | | | | | | | | | | |
|---|---|---|---|---|---|---|---|---|---|---|---|---|---|
| | 반죽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주변의 방해물에 의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작업장 정리정돈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 작업특성 요인 | 근골격계 부담작업 방치에 따른 건강장해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 1.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후 작업 실시 | 1 (하) | 2 (중) | 2 (낮음) | 작업전 스트레칭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8조 [조도] | 1. 적정 조도 유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에 의한 맞음, 깔림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 1. 출입금지구역관리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성형 | 작업특성 요인 | 반복작업에 따른 근골계 손상 | | 1.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불안정한 자세에 따른 요통 | | 1. 작업전후스트레칭 실시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숙성 및 굽기 | 전기적 요인 | 바닥의 전선.이동전선 손상에 의한 감전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1. 통로바닥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 사용 금지 또는 손상방지 용 적절한 조치 | 1 (하) | 2 (중) | 2 (낮음) |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 작업특성 요인 | 오븐에 근접시 고열에 의한 화상사고 발생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7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1. 방열장갑 제공 | 1 (하) | 2 (중) | 2 (낮음) | 방열장갑 제공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 | 고온의 물질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상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1.미숙련자에대한철저한교육실시<br>2.방열장갑제공 | 1 (하) | 2 (중) | 2 (낮음) | 방열장갑 제공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냉각 | 전기적 요인 | 냉각 작업 중 본체 내부 절연파괴 등으로 누전발생 시 작업자 신체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1. 올바른 사용 법 교육 및 숙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검수 및 포장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 작업 등에 의한 근골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1 (하) | 2 (중) | 2 (낮음) | 운반카트 비치 | 2 (낮음) | 11/18 | 11/18 | 이지승 |
| | | | 단순반복작업 등에 의한 근골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환경 요인 | 이동공간과 작업자 이동공간의 중첩에 따른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 1.장애물제거<br>2.통로구획 | 1 (중)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원두 로스팅 | 입고 | 기계적 요인 | 적재물 무너짐에 의한 맞음/깔림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178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1. 원자재 적적량 적제 | 1 (하) | 1 (소) | 1 (낮음) | | 1 (낮음) | | | |
| | | | 작업장 주변의 방해물에 의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2 (중) | 1 (소)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환경 요인 | 안전통로의 미확보로 인한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 1. 장애물 제거 | 2 (중) | 1 (소) | 2 (낮음) | | 2 (낮음) | | | |
| | 고르기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도가 부족한 경우 | 안전보건규칙 제8조(조도) | 1. 적정 조도 및 별도 조명 설치 | 1 (하) | 1 (소) | 1 (낮음) | | 1 (낮음) | | | |
| | 로스팅 (볶기) | 화학(물질)적 요인 | 인화성 증기로 인한 점화 위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1. 수시 점검하여 안전성 확인 | 1 (하) | 2 (중) | 2 (낮음) | 정기 안전점걸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박용희 |
| | | 작업환경 요인 | 로스팅기기 복사열에 따른 화상 위험 | | 1. 로스팅 장비 고열 안내표시 | 1 (하) | 2 (중) | 2 (낮음) | 안내표시 부착 | 2 (낮음) | 11/18 | 11/18 | 박용희 |
| | 선별 | 작업특성 요인 |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 1. 작업자세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포장 | 작업특성 요인 |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 | 1. 작업자세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환경 요인 | 포장 작업 시 작업장의 조명 상태에 의한 영향을 받음 | 안전보건규칙 제8조 [조도] | 1. 작업면 조도확보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카페 | 입고 | 기계적 요인 | 작업 및 이동 중인 지게차에 의한 작업자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 1.장애물제거<br>2.통로구획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작업장 주변의 방해물에 의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 | | | | | | | | | |
|---|---|---|---|---|---|---|---|---|---|---|---|---|---|
| | 분쇄 | 기계적 요인 | 분쇄기 분쇄날에 손가락 베임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44조 [보호구의 지급 등] | 1. 기계작동 방법 교육 | 1 (하) | 3 (대) | 3 (보통) | | 3 (보통) | | | |
|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 시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난청)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1. 휴식시간 제공 | 1 (하) | 1 (소) | 1 (낮음) | | 1 (낮음) | | | |
| | | |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 | 1. 신체 부담 감소 작업자세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추출/혼합 | 작업특성 요인 | 투입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 | 1. 작업자세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직무 교대에 따른 반복 업무 자제 | 2 (낮음) | 11/18 | 11/18 | 박용희 |
| | |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직무 교대에 따른 반복 업무 자제 | 2 (낮음) | 11/18 | 11/18 | 박용희 |
| | | 작업환경 요인 | 뜨거운 물을 통한 원액 추출로 화상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방지) | 1. 주기적인 직무교육 실시 | 2 (중) | 1 (하) | 2 (낮음) | 카페바리스타 직무교육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박용희 |
| | 계산 | 작업특성 요인 | 계산 작업 시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작업환경 개선 | 1 (하) | 2 (중) | 2 (낮음) | | 1 (낮음) | | | |
| | | | 계산 작업에서의 정적인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안전보건규칙 제80조 [의자의 비치] | 1. 의자 비치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음료 제조 | 작업환경 요인 | 따뜻한 음료 제조시 화상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방지) | 1. 음료제조 방법 교육 및 화상 방지교육 실시 | 1 (하) | 2 (중) | 2 (낮음) | 음료제조 방법 교육 및 화상 방지교육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박용희 |
| 도예 공방 | 원료 입고 | 기계적 요인 | 하역, 운반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 | 1. 원료 적제공간 정리정돈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작업장 주변의 방해물에 의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토련 | 기계적 요인 | 동력전달부 노출로 인해 작업자 끼임, 감김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1. 안전덮개 등 설치 | 1 (하) | 3 (대) | 3 (보통) | | 3 (보통) | | | |
| | | | 작업장 주변의 방해물에 의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2 (중) | 1 (소)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적 요인 | 토련기 구동모터 누전 발생 시 작업자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1.누전에감전예방을위해해당부분(전기기계기구금속제외함/외피/철대,충전우려가있는비충전금속체,전기미사용설비일부)접지<br><br>2.접지설비유지/점검/보수/재설치 | 1 (하) | 3 (대) | 3 (보통) | 정지 점걸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화학(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1. 주기적인 환기 | 1 (하) | 3 (대) | 3 (보통) | 일일 오전 오후 환기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작업특성 요인 | 무거운 중량물작업에 의한 근골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 1. 인력작업 시 과도한 중량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 | 1 (하) | 2 (중) | 2 (낮음) | 이동카트 비치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성형 | 기계적 요인 | 동력전달부 노출로 인해 작업자 끼임, 감김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1. 장비 숙달교육 실시 | 1 (하) | 3 (대) | 3 (보통) | 전문인력 장비 운용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 교체 작업 중인 설비의 불시 이동에 의한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1. 비정상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작업장 주변의 방해물에 의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전기적 요인 | 성형기 구동모터 누전 발생 시 작업자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1.이중절연장치,감전위험이없는장소(절연대),비접지방식의전로접속기구는비접지사용<br><br>2.접지설비유지/점검/보수/재설치 | 1 (하) | 2 (중) | 2 (낮음) | 정기점걸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화학(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1. 주기적인 환기 | 1 (하) | 2 (중) | 2 (낮음) | 일일 오전 오후 환기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작업특성 요인 | 단순반복작업 등에 의한 근골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2 (중) | 1 (소)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 | | | | | | | | | |
|---|---|---|---|---|---|---|---|---|---|---|---|---|---|
| | 유약 볼밀 | 기계적 요인 | 동력전달부 노출로 인해 작업자 끼임, 감김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1. 안전덮개 등 설치 | 1 (하) | 2 (중) | 2 (낮음) | 안전 덮개 설치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 작업 및 이동 중인 지게차에 의한 작업자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 1. 장애물 제거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전기적 요인 | 볼밀기 구동모터 누전 발생 시 작업자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1. 접지설비 유지/점검/보수/재설치 | 1 (하) | 3 (대) | 3 (보통) | 정기 점걸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화학(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1.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지급 및 착용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 시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난청)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1. 근로자 착용의무 | 1 (하) | 1 (소) | 1 (낮음) | | 1 (낮음) | | | |
| | | | 단순반복작업 등에 의한 근골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시유 제진 /시유 | 기계적 요인 | 동력전달부 노출로 인해 작업자 끼임, 감김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1. 안전덮개 등 설치 | 1 (하) | 2 (중) | 2 (낮음) | 안전 덮개 설치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 작업장 주변의 방해물에 의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전기적 요인 | 시유기 구동모터 누전 발생 시 작업자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1. 접지설비 유지/점검/보수/재설치 | 1 (하) | 3 (대) | 3 (보통) | 정기점걸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화학(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1.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지급 및 착용 | 1 (하) | 3 (대) | 3 (보통) | 시유 시 마스크 장갑 창용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 | | | | | | | | | | |
|---|---|---|---|---|---|---|---|---|---|---|---|---|---|
|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 시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난청)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1. 근로자 착용의무 | 1 (하) | 3 (대) | 3 (보통) | 귀막개 비치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 무거운 중량물작업에 의한 근골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 1. 인력작업 시 과도한 중량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단순반복작업 등에 의한 근골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2 (중) | 2 (중) | 4 (보통) | 휴게시간 제공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건조 | 작업특성 요인 |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중량물 취급작업 시 요통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 1. 작업장 주변 물품중량(5KG이상)과 무게중심 안내 표시, 적절한 보조도구 사용 | 1 (하) | 2 (중) | 2 (낮음) | 안전교육 실시 및 소분 이동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 단순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 [작업조건] | 1.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적정 배분 | 1 (하) | 2 (중) | 2 (낮음) | 휴게시간 제공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소성 | 화학(물질)적 요인 |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가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72조 [후드] | 1. 정기적인환기 | 1 (하) | 3 (대) | 3 (보통) | 일일 오전 오후 환기 | 2 (낮음) | 11/18 | 11/18 | 권병수 |
|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소의 작업면 조도 불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8조 [조도] | 1. 작업면 조도확보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포장/출하 | 작업특성 요인 | 반복동작/부적절한작업 자세/무리한 힘의 사용등 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사회복지사업 | 재활서비스 | 작업특성 요인 | 부적절한 자세,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 1. 해당 사유 발생 시 즉시 유해요인 확인 및 소거 조치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환경 요인 | 재활프로그램 진행 중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 | 1. 작업장 및 재활프로그램실 청결 유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야간근무 등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1.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해 건강장해 예방조치 | 1 (하) | 2 (중) | 2 (낮음) | 종사자간 업무 배치 | 2 (낮음) | 11/18 | 11/18 | 신희정 |

| | | | | | | | | | | | | | |
|---|---|---|---|---|---|---|---|---|---|---|---|---|---|
| | 사무 업무 | 작업특성 요인 | 단순반복의 전산작업에 따른 근골격계부담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반복적인 복사, 서류 작성에 따른 피로도 및 스트레스 증가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2 (중) | 1 (소)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전화상담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및 피로도 증가에 따른 건강장해 유발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휴게시간 제공 및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신희정 |
| | 직업 (부모) 상담 | 작업특성 요인 | 부적절한 자세,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 1. 해당사유 발생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환경 요인 | 전화상담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및 피로도 증가에 따른 건강장해 유발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유해성등의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휴게시간 제공 및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 2 (낮음) | 11/18 | 11/18 | 신희정 |
| | 차량 운행 | 작업특성 요인 | 장거리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정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1. 스트레칭 교육 | 2 (중) | 2 (중) | 4 (보통) | 정기적인 스트레칭교육 및 차량 관리철저 | 3 (보통) | 11/18 | 11/18 | 황영민 |
| | | | 조작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충돌 위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2조 [접촉의 방지] | 1. 운전자교육 | 2 (중) | 2 (중) | 4 (보통) | 차량 관리철저 | 3 (보통) | 11/18 | 11/18 | 황영민 |
| | 시설 관리 | 기계적 요인 | 외부 시설의 관리 작업 시 장애물에 따른 넘어짐의 위험이 발생함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높은 장소의 점검 및 수리 작업 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1. 안전교육 실시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특성 요인 | 청소, 소독 등 작업 시 다른 용도의 작업도구를 사용할 경우 위험이 발생함 | 안전보건규칙 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1.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 | | | | | | | | | |
|---|---|---|---|---|---|---|---|---|---|---|---|---|---|
| 택배 배송 | 집하 | 작업특성 요인 | 고객으로부터 무거운 택배물품 인수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1 (하) | 3 (대) | 3 (보통) | | 3 (보통) | | | |
| | | |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1 (하) | 3 (대) | 3 (보통) | 이동카트 제공 | 2 (낮음) | 11/18 | 11/18 | 황영민 |
| | | 작업환경 요인 | 배송 시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고온 및 한파 노출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7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도로폭 협소로 교통사고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2 (중) | 2 (중) | 4 (보통) | 운전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3 (보통) | 11/18 | 11/18 | 황영민 |
| | 배송 | 기계적 요인 | 적재된 원자재의 불안전한 이동으로 인한 중량물의 떨어져 작업자가 맞거나 깔림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1 (하) | 3 (대) | 3 (보통) |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2 (낮음) | 11/18 | 11/18 | 황영민 |
| | | 작업환경 요인 | 배송 시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고온 및 한파 노출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56조 [휴식 등]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2 (중) | 2 (중) | 4 (보통) | 휴게시간 제공 | 3 (보통) | 11/18 | 11/18 | 황영민 |
| | | | 계단을 이용한 배송 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1.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2 (중) | 2 (중) | 4 (보통) | 작업 시 유해성의 주지 | 3 (보통) | 11/18 | 11/18 | 황영민 |
| | | | 배송물량의 과중 등에 의해 야간 작업 수행으로 스트레스 및 피로도 증가로 건강장해 발생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1.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행정 사무 업무 | 문서 취합 | 기계적 요인 | 사무실 오염으로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특성 요인 | 반복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시행] | 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 | | | | | | | | | | |
|---|---|---|---|---|---|---|---|---|---|---|---|---|---|
| | 장소 이동 | 기계적 요인 | 사무실 오염으로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특성 요인 | 반복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시행] | 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환경 요인 | 공간협소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정리/ 전달 | 작업환경 요인 | 공간협소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자리 이동 | 기계적 요인 | 사무실 오염으로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 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 | | 작업환경 요인 | 공간협소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1.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 1 (하) | 2 (중) | 2 (낮음) | | 2 (낮음) | | | |

<서식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이지승(제과제빵) |
| 수 행 일 시 | 2024. 11. 15. |

| 유해·위험작업 | 사고, 질병의 유형 |
|---|---|
| (1) 제과제빵 생산 원재료 입고시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1) 근골격계 질환 |
| (2) 제과제빵실 설비(오븐 및 반죽기) 사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 | (2) 골절, 근골격계질환 |
| (3)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 위험 | (3) 근골격계질환 |
| (4) 제과제빵 생산품 생산시 오븐 등 가열기기 사용에 따라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 또는 팔 부위 화상의 위험이 있음 | (4) 화상 |
| (5) 기계설비 관리에 따른 감전 위험 | (5) 감전 |
|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 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베임·찔림
**⑨ 감전**
⑩ 폭발·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서식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박용희(로스팅) |
| 수 행 일 시 | 2024. 11. 15. |

| 유해·위험작업 | 사고, 질병의 유형 |
|---|---|
| (1) 원자재 및 생산품 이동 및 적재에 따른 맞음 깔림 위험 | (1) 골절, 근골격계질환 |
| (2) 원자재 및 생산품 운반에 따른 안전통로 미확에로 인한 부딪힘 위험 | (2) 골절, 근골격계질환 |
| (3) 로스팅 장비 운용에 따른 따른 복사열 화상 위험 | (3) 화상 |
| (4)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위험 | (4) 근골격계질환 |
|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 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베임·찔림
**⑨ 감전**
⑩ 폭발·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서식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이유선(카페) |
| 수 행 일 시 | 2024. 11. 15. |

| 유해·위험작업 | 사고, 질병의 유형 |
|---|---|
| (1) 커피 음료 제조 등의 반복작업 등에 따른 위험 | (1) 근골격계질환 |
| (2) 스팀 수증기 및 온수 사용에 따른 위험 | (2) 화상 |
| (3) 그라인더 및 블렌터 활용에 따른 끼임 위험 | (3) 끼임 |
| (4) 협소한 공간 여러인원 근무에 따른 부딪힘 및 미끄러짐 위험 | (4) 근골격계질환 |
|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 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베임·찔림
⑨ 감전
⑩ 폭발·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서식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권병수(도예) |
| 수 행 일 시 | 2024. 11. 15. |

| 유해·위험작업 | 사고, 질병의 유형 |
|---|---|
| (1) 도예 흙재료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위험 | (1) 근골격계질환 |
| (2) 토련 작업에 따른 동력전달부 노출에 따른 위험 | (2) 끼임 |
| (3) 도자기제작 생산에 따른 분진 에 따른 위험 | (3) 진폐 |
| (4) 단순반복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위험 | (4) 근골격계질환 |
| (5) 작업장 공간 방해물에 따른 걸림, 넘어짐 위험 | (5)근골격계질환 |
|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 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베임·찔림
⑨ 감전
⑩ 폭발·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서식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황영민(배송 및 프로그램 차량 운행) |
| 수 행 일 시 | 2024. 11. 15. |

| 유해·위험작업 | 사고, 질병의 유형 |
|---|---|
| (1)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유발 될 수 있음 | (1) 근육통 |
| (2) 차량 운행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차량 간 추돌사고 및 운전 중 충격으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인 무리가 갈 수 있음 | (2) 교통사고 |
| (3) 물품 상하차시 고중량 물품 이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3) 근골격계질환 위험 |
|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 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베임·찔림**
⑨ 감전
⑩ 폭발·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서식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이유선 |
| 수 행 일 시 | 2024. 11. 15. |

| 유해·위험작업 | 사고, 질병의 유형 |
|---|---|
| (1) 사다리를 통한 물품 정리를 할 경우 사다리 등의 넘어짐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발 생 될 수 있음<br><br>(2) 무거운 물건을 옮길 시 바르지 못 한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릴 경우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br><br>(3) 물품 이동시 공간 미 확보로 인한 넘어짐 사고 발생 할 수 있음 | (1) 골절<br><br>(2) 근육염좌 |
|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 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베임·찔림
⑨ 감전
⑩ 폭발·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서식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신희정 |
| 수 행 일 시 | 2024. 11. 15. |

| 유해·위험작업 | 사고, 질병의 유형 |
|---|---|
| (1) 이용인들의 낯선 환경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부적응 등으로 나타나는 돌발행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 | (1) 골절 |
| (2) 프로그램 장소 또는 공간의 구조물 파악 및 정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넘어지는 사고 발생 위험 | (2) 타박상 |
| (3) 상담 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및 피로도 증가에 따른 건강장해 유발 | (3) 스트레스 |
|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 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베임·찔림
⑨ 감전
⑩ 폭발·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서식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이지승 |
| 수 행 일 시 | 2024. 11. 15. |

| 유해·위험작업 | 사고, 질병의 유형 |
|---|---|
| (1) 전기 관리 및 작업 시 감전사고 발생 위험<br>(2) 비품 정리정돈 미흡에 따른 전도사고 위험<br>(3) 시설관리 수행을 위한 사다리 작업 시 추락 위험<br>(4) 무거운 물건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br>(5)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 발생 | (1) 감전<br>(2) 전도<br>(3) 추락<br>(4) 골절 및 염좌 |
|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 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사고의 유형

| | | |
|---|---|---|
| **① 떨어짐** | **⑨ 감전** | |
| **② 넘어짐** | **⑩ 폭발·파열** | |
| **③ 깔림** | **⑪ 화재** | |
| **④ 부딪힘** |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
| ⑤ 맞음 |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 |
| **⑥ 무너짐** |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 |
| ⑦ 끼임 | ⑮기타 | |
| **⑧ 절단·베임·찔림** | | |

질병의 유형

| |
|---|
| **① 진폐** |
| ② 중독 |
| ③ 난청 |
| **④ 요통** |
| **⑤ 기타** |

<서식 3>

|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
| 실 시 방 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현장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
| 담 당 자 | | 근로자 성명(소속) | |
| 수 행 일 시 | | | |
| 경험담 1<br><br>경험담 2<br><br>경험담3<br><br>근로자 의견 수행자 의견<br><br>○ 유해·위험 경험의 원인과 반성할 점 ○ 경험에 대한 조언 | | | |

<서식 4>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 시 방 법 | 재해조사보고서,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실시결과, 아차사고 등 자료로부터 유해·위험작업을 찾음 |

| 자료의 종류 | 발생일시 | 유해·위험작업 |
|---|---|---|
| (1) 재해조사보고서 | | |
| | | |
| | | |
| | | |

| 자료의 종류 | 실시일시 | 관리구분 | 유해인자의 종류 |
|---|---|---|---|
| (2) 작업환경측정 | | | |
| | | | |
| | | | |
| | | | |

| 자료의 종류 | 실시일시 | 관리구분 | 건강진단의 종류 |
|---|---|---|---|
| (3) 건강진단 | | | |
| | | | |
| | | | |
| | | | |

※ 건강진단 실시결과는 질병 유소견자를 중심으로 파악

| 자료의 종류 | 경험일시 | 유해·위험작업 |
|---|---|---|
| (4) 아차사고 보고 | | |
| | | |
| | | |
| | | |

<서식 5>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 |
|---|---|
| 실시방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체크리스트 조사표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
| 담 당 자 | |
| 수행일시 | |

| 작업내용 | 유해·위험요인 |
|---|---|
| | |

<서식 6>

#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보고서

| | |
|---|---|
| 교육일시 | 2024년 11월 14일 09:00 ~ 10:00 |
| 교육장소 | 광명장애인복지관 3층 강당 |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참석자 명단

| 소속/직책 | 성 명 | 서명 | 소속/직책 | 성 명 | 서명 |
|---|---|---|---|---|---|
| 시설장 | 이광수 | | 직업훈련교사 | 박용희 | |
| 사무국장 | 최가해 | | 간호사 | 문희인 | |
| 직업훈련교사 | 황영민 | | 생산판매기사 | 조용호 | |
| 직업훈련교사 | 신희정 | | 생산판매기사 | 박유경 | |
| 직업훈련교사 | 이유선 | | 사무원 | 김은혜 | |
| 직업훈련교사 | 권병수 | | 조리원 | 정옥자 | |
| 직업훈련교사 | 이지승 | | 위생원 | 석원숙 | |

<서식 7>

#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보고서

| | |
|---|---|
| 회의일시 | 2024년 1월 19일 09:00 ~ 10:00 |
| 회의장소 | 광명장애인복지관 4층 세미나실 |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참석자 명단

| 소속/직책 | 성 명 | 서명 | 소속/직책 | 성 명 | 서명 |
|---|---|---|---|---|---|
| 시설장 | 이광수 | 이광수 | 사무국장 | 최가해 | 최가해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8. 12. 31.>

#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 | | | |
|---|---|---|---|---|---|---|
| Ⅰ. 사업장 정보 |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②사업장명 | | ③근로자 수 | | | |
| | ④업종 | | 소재지 | ( - ) | |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 원도급인 사업장명<br>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 사업장명<br>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
| | 건설업만 작성 | 발주자 |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 |
| | | ⑦원수급 사업장명 | 공사현장 명 | | | |
|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 | |
| | | ⑨공사종류 | 공정률 | % | 공사금액 백만원 | |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 | | | | | |
|---|---|---|---|---|---|
| Ⅱ. 재해 정보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 [ ]남 [ ]여 |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 | ⑪직업 | |
| | 입사일 | 년 월 일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 년 월 | |
| |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 | |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 | |
| | ⑮상해종류 (질병명) | |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 |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br>사망 여부 [ ] 사망 |

| | | | |
|---|---|---|---|
|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⑱ 재해 발생 개요 | 발생일시 |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
| | | 발생장소 | |
| | | 재해관련 작업유형 | |
|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
| | ⑲재해발생원인 | | |

| | |
|---|---|
| Ⅳ. ⑳재발방지 계획 | |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
| 재해 분류자 기입란<br>(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발생형태 □□□ 기인물 □□□□<br>작업지역·공정 □□ □<br>□ 작업내용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⑯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⑰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 Ⅲ. 재해발생정보

⑱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 | |
|---|---|
| 발생일시 |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
| 발생장소 |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
| 재해관련 작업유형 |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⑲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 Ⅳ. 재발방지계획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별첨 1>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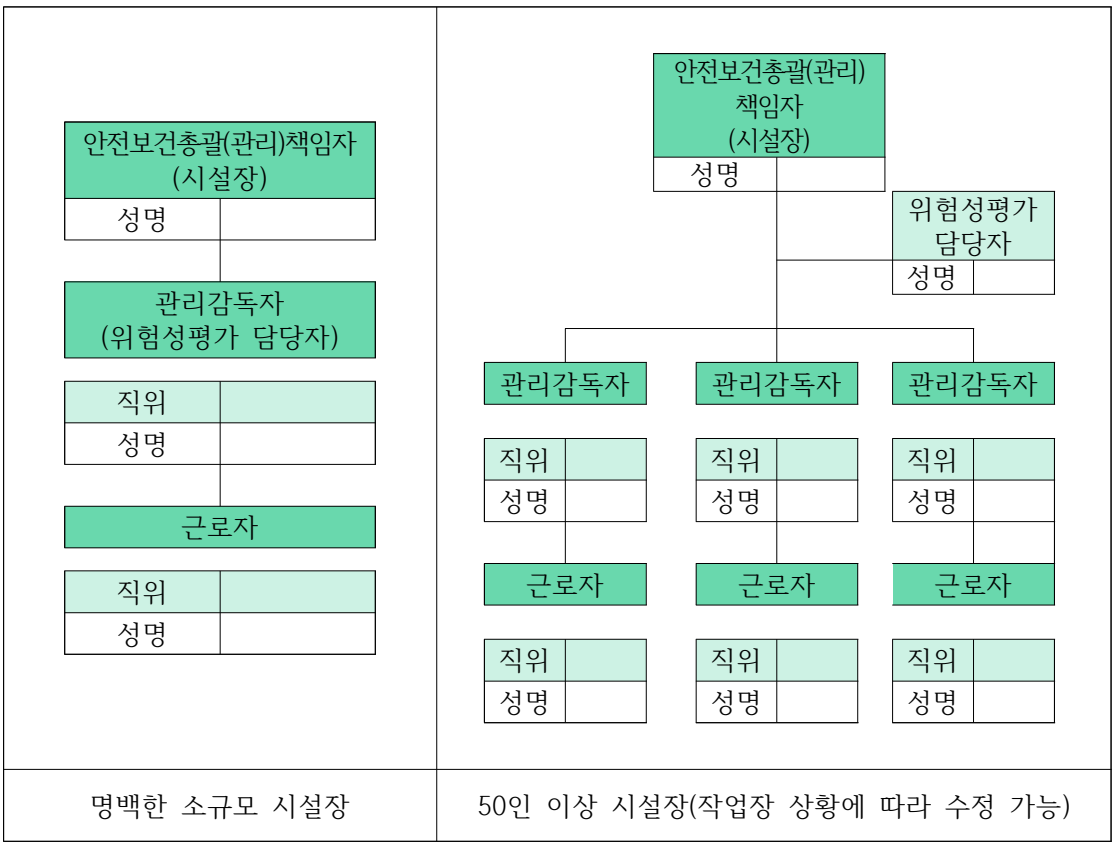
(2024.03.19. 개정)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산하 모든 시설(이하 '법인 산하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별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법인 산하 시설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의 구성은 <표1>과 같이 한다.

<표1> 위험성평가 조직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은 <표2>와 같이 한다.

<표2>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도

| 조직 | 역할과 책임(권한) |
|---|---|
| 안전보건총괄(관리)<br>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br>○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br>-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br>-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br>-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br>-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br>○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br>○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br>○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독려 |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br>○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br>○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br>○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br>○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
| 근로자 | ≪위험성평가 참여≫<br>○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br>○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br>○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br>○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br>○아치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 |
| 위험성평가<br>담당자 |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br>○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br>○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br>○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br>○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br>○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사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6조(실시시기)** 법인 산하 시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고, 이후 매년 2회 실시한다.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정기평가 시에는 첫째,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둘째,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셋째,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제7조(실시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게시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내용에 포함한다.

⑥ 필요 시 전담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 들을 정의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 시설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

③ 3단계 : 위험성 결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

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 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를 결정한다.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한다.

⑤ 5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한다.

**제9조(위험성평가의 방법)** 법인 산하 시설의 위험성평가 방법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또는 시설 현장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제10조(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법인 산하 시설의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사업주·위험성평가 담당자·근로자들이 모인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착수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제11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법인 산하 시설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잘 볼 수 있는 방법(가독성 높은 큰 글씨, 전광판 등)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② 법인 산하 시설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 포함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제12조(근로자의 참여 방법)** 법인 산하 시설은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13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법인 산하 시설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산업안전 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품질 문제 여부 등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 청취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참여자는 위험성 결정 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강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제14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이행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차기(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시설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법인 산하 시설 안전보건 기록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년 2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기록물은 년 2회(5월, 11월) 재단법인에 제출한다.